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9

발의연월일: 2024. 7. 12.

발 의 자: 박용갑·장철민·문진석

이기헌 · 정준호 · 민홍철

조승래 • 안규백 • 박희승

고민정 · 황명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조 정의 조항에서 사기죄의 경우 특정사기범죄로 해당 범죄를 유사수신, 다단계, 범죄단체, 보이스피싱 사기 등만 한정하고 있음. 그러다 보니 전세사기가 부패범죄의 범위 내에 빠져 있는 입법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전세사기는 서민들이 평생 모은 돈을 강탈하는 '경제적 살 인'행위이기 때문이며, 특히 최대 피해자가 20·30 청년세대와 취약 계층이라는 점에서 범죄수익을 끝까지 추적·색출해야만 할 것임.

이에 현행법의 특정사기범죄의 유형에 전세사기 피해자등이 발생한 사기를 추가함으로써, 해당 범죄의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범죄피해재산 도 몰수·추징의 특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3호).

법률 제 호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 중 "유사수신행위 또는"을 "유사수신행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 피해자등이 발생한 사기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범죄피해재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범죄피해재산"이란 별표에	3
규정된 죄 가운데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	
의 범죄행위에 의하여 그 피	
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또는	
그 재산의 보유・처분에 의하	
여 얻은 재산을 말한다.	
가. 「형법」 제2편제39장 사	가
기와 공갈의 죄 중 제347	
조, 제347조의2 및 제351	
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	
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형법」 제1	
14조에 따른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범행한 경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u>유사수신행위 또는</u> 「방문	<u>유사수신행위, 「전세사기</u>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	<u>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u>
2조제5호에 따른 다단계판	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

매의 방법으로 기망(欺罔) 하여 범행한 경우 및 「전 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 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 하는 경우(이하 "특정사기 범죄"라 한다)로 한정한 다]와 「특정경제범죄 가 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중 「형법」 제347 조, 제347조의2 및 제351 조(제347조 및 제347조의2 의 상습범만 해당한다)에 해당하는 죄(특정사기범죄 로 한정한다)

나. (생 략) 4.·5. (생 략)

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
자등이 발생한 사기에 해
<u>당하는 경우,</u>
나.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